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개정 2023. 10. 31.>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제74조제1항 관련)

구분				검사 유효기간
차종	사업용 구분	규모	차령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 ·중형·대형	모든 차령	2년[신조차(新造車)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경형·소형 ·중형·대형	모든 차령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2년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1년
		중형·대형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중 길이 5.5미터 미만인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차령이 8년 초과인 경우	6개월
	사업용	경형·소형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2년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1년
중형·대형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8년 초과인 경우	6개월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	차령이 4년 이	2년

			하인 경우		
			차령이 4년 초 과인 경우	1년	
		중형·대형		차령이 5년 이 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 과인 경우	6개월
	사업용	경형·소형	모든 차령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 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중형	차령이 5년 이 하인 경우
		차령이 5년 초 과인 경우	6개월		
		대형	차령이 2년 이 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 과인 경우	6개월	
		특수자동차	비사업용 및 사업용	경형·소형 ·중형·대 형	차령이 5년 이 하인 경우
차령이 5년 초 과인 경우	6개월				

비고

1. 위 표에도 불구하고,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법 제3조 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피견인자동차에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한다.